

(붙임 1)

## 임원 선임 내용

### 1. 선임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경력 <sup>1)</sup>	겸직 사항 <sup>2)</sup>	자격요건 확인결과 <sup>3)</sup>
대표이사 (상임, 등기)	박철국 (朴哲國)	701016	21.05.26 (최초선임)	24.05.25 (3년)	대표 이사	카카오페이지 (기업금융센터이사) 투비소프트 (부사장)	해당 없음	결격사유 없음
이사 (상임, 등기)	이효숙 (李孝淑)	590110	21.05.26	3년 (24.05.25)	사내 이사	개인사업 (창동역구내식당) 라온주야간보호센 터(업무지원팀)	해당 없음	결격사유 없음
감사 (비상임, 등기)	이신형 (李信炯)	850104	21.05.26 (최초선임)	24.05.23 (3년)	감사	법무법인정행 (법무실 변호사)	법무 법인 정행 변호 사	결격사유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 2. 임원현황(변동후)

직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주요경력 <sup>1)</sup>	겸직 사항 <sup>2)</sup>	비고
대표이사 (상임, 등기)	박철국 (朴哲國)	701016	21.05.26 (최초선임)	24.05.25 (3년)	카카오페이지 (기업금융센터이사) 투비소프트 (부사장)	해당 없음	
사내이사 (상임, 등기)	김홍달 (金洪達)	590530	20.09.24 (최초선임)	23.09.23 (3년)	한국은행조사부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부 우리금융지주 전무 OK저축은행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상임, 등기)	이효숙 (李孝淑)	590110	21.05.26	24.05.25 (3년)	US EK Science 수석연구원 (주)엘씨엠코리아 (경영지원부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최윤식 (崔潤植)	580821	20.09.24	23.09.23 (3년)	월드물산 대표 에이치브이씨(주) 이사	월드물산 대표	
감사 (비상임, 등기)	이신형 (李信炯)	850104	21.05.26 (최초선임)	24.05.25 (3년)	법무법인정행 (법무실 변호사)	법무법인정 행변호사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박철국	직위	상근 등기 이사(대표이사)	
			심사 항목	심사 결과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 사항 없음		
2.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 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박철국	직 위	상근 등기 이사(대표이사)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박철국	직 위	상근 등기 이사(대표이사)
			비 고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종 합 의 견 : 상기 박철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 제1항의 임원(대표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모네타자산운용(주)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

2021년 05월 26일

모네타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철국 (인)



(붙임 2)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이효숙	직위	사내이사(상근 등기)	
			심사항목	심사결과
<b>&lt;공통사항&gt;</b>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 사항 없음		
2.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 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이효숙	직 위	사내이사(상근 등기)	
			심 사 항 목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이효숙	직 위	사내이사(상근 등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상기 이효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 제1항의 임원(사내이사, 상근, 등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모네타자산운용(주) 사내이사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

2021년 05월 26일

모네타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철국 대표이사

(붙임 2)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이신형	직위	감사(비상근 등기)	
			심사항목	심사결과
<b>&lt;공통사항&gt;</b>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 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 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 사항 없음		

성명	이신형	직위	감사(비상근 등기)	
			심사항목	심사결과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 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이신형	직 위	감사(비상근 등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상기 이신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 제1항의 임원(감사, 비상근, 등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모네타자산운용(주) 감사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

2021년 05월 26일

모네타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철국 (인)

(붙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내역**  
(사회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함)

1. 일 시 : 2021년 05월 26일

2.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로 601, 3층(대치동, 보성빌딩)  
모네타자산운용(주) 회의실

3. 위원 현황

위원수 : 총 4명

위원장 : 대표이사 김 홍달

4. 참석자(위원 이외의 배석자 포함) :

위원: 대표이사 김 홍달, 사내이사 송재용, 사내이사 박종홍,  
사내이사 이 병홍

5. 불참자 : 없음

6. 후보자 선정방식 : 이사회 추천 및 결의

※ 첨부서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1부.

모네타자산운용 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김홍달(인)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모네타자산운용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21년 05월 25일 09시 소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다.

참석 위원 : 대표이사 김홍달, 사내이사 송재용, 사내이사 박종홍, 사내이사 이병홍

2021년 5월26일자로 사내이사 송재용, 사내이사 박종홍, 사내이사 이병홍, 사외이사 이혜경, 감사 황규범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하고, 또 대표이사 김홍달이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박철국, 이효숙을 각 사내이사(상근,등기)로 그 중 박철국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감사 황규범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신형을 감사(비상근, 등기)로 하자는 추천이 있고 위원 전원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박철국을 사내이사(상근, 등기, 대표이사)로 이효숙을 사내이사(상근,등기)로 이신형을 감사(비상근, 등기)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2021년 05월26일 오전 10:00시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이상으로서 안건 전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이사회를 소집하다.

(회의 종료 시간 : 09시 25분)

2021년 05월 25일

모네타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601, 3층(대치동, 보성빌딩)

대표이사 김 홍 달

